



화정교육통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55
http://전주화정초등학교.kr
(교무실 270-8403, 행정실 270-8474)

함께 배우고
서로 나누며
더불어 성장하는
화정 교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칙 특례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도 고시 내용에 맞게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학칙(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 특례가 적용**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특례내용에 대해 안내하니 세부 사항을 참고하셔서 가정에서도 지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신설2022.12.27.]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한시적 특례 적용 내용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①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없고 교육활동을 지속하여 방해할 경우 또는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③ 수업 시간에 무단으로 이탈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무실 (수업 종료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로 이동	교사 재량 과제 (행동상찰문 교과서 요약 활동지 등)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① 3호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아 수업 시간 외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그 외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문자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음 생활지도로 인해 하교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는 학부모에게 사전통지함	

- 제12조 제7항에 의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했음에도 학생이 지속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음.

[제12조제 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의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당일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본인 수령 원칙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리고, 학부모가 3일 내 찾아가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그 밖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규정과 화정초등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이 다를 경우 고시를 우선하여 적용함.

2023. 10. 16.

전 주 화 정 초 등 학 교